

#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5. 23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5월 11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5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128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2007. 5. 23)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유 병 현

### 가. 제안이유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25% 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나. 주요 제정 골자

○ 역모기지 실시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 (안 제4조의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이고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는 일정규모의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구세감면조례 표준안과 수정사항이 2006. 11. 1과 2007. 4. 17 각각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이첩·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65세이상)의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세제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 25% 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역모기지 실시주택 재산세 감면 신설 (안 제4조의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이고 연간 총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는 일정규모의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함

## 3. 개정근거

가. 「지방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2

##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7. 3. 29 ~ 2007. 4. 18)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7. 4. 26)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이고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 신설 &gt;</p>	<p>제4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이고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충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